

POSTECH 입찰공고 제26A0891호

포항공과대학교에서 「[52083][52115]생명과학관 202호, 206호 리모델링 공사(건축)」 입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. 08. 05.

포항공과대학교 총장

입찰에 부치는 사항 및 일정	가. 입찰건명 : [52083][52115]생명과학관 202호, 206호 리모델링 공사(건축) 나. 현장설명 : 2026. 08. 13. (목) 11:00 장소: 화학관 101호 다. 가격조사 : 2026. 08. 20. (목) 11:00까지 (전자입찰시스템 가격조사에 입력) 라. 입찰등록 : 2026. 08. 21. (금) 09:00 ~ 10:50 (전자입찰시스템) 마. 입찰실시 : 2026. 08. 21. (금) 11:00 ~ (실시간 온라인 입찰 진행) 바. 공사에정기간: 29일 이내										
입찰참가자격	가. 본 대학 계약규정 제5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. 첨부 시방서에 의거 공급이 가능하고 담당자에게 사양 및 공사에 대해 확인 후, 가격조사 및 입찰등록에 모두 참여한 업체 다. 첨부 시방서, 과업지시서의 입찰참가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 라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업 면허 등록업체 마.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/경북인 업체 바. 제시된 사양과 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물품 공급 및 설치(공사)가 가능한 업체 사.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6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.										
낙찰자 선정방법	일반경쟁입찰(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(우리대학 계약규정 제38조))										
대금결제방법	검수완료 후 100% 현금지급										
입찰 참가자 유의사항	가. 입찰 참가자는 업체 대표 및 소속직원에게 한하며, 입찰공고서, 계약규정, 시설공사 일반약관, 특별약관, 첨부사양(도면, 시방서, 내역, 특수조건 등)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. 나. 본 건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사양설명회 이전에 본 시스템에 (https://posbid.postech.ac.kr) 회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. 다. 1회 입찰가격 투찰시간은 최장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. 라. 입찰보증금 : 입찰금액의 5%를 유예하되 낙찰 후 계약 미이행시 회수 조치 마.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법정제경비를 아래의 비율대로 반영하여야 하며,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함. 제경비는 준공 시 사후 정산함.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류</th><th>요율/금액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고용보험료</td><td>노무비*1.01%</td></tr> <tr> <td>산재보험료</td><td>노무비*3.56%</td></tr> <tr> <td>환경보전비</td><td>(재료비+직접노무비+기계경비) * 0.3%</td></tr> <tr> <td>석면분담금</td><td>노무비*0.006%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종류	요율/금액	고용보험료	노무비*1.01%	산재보험료	노무비*3.56%	환경보전비	(재료비+직접노무비+기계경비) * 0.3%	석면분담금	노무비*0.006%
종류	요율/금액										
고용보험료	노무비*1.01%										
산재보험료	노무비*3.56%										
환경보전비	(재료비+직접노무비+기계경비) * 0.3%										
석면분담금	노무비*0.006%										

임금채권부담금	노무비*0.09%
산업안전보건관리비	1,202,512원

바. 입찰무효사유 : 대학 계약규정 제41조

사.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가능(공동수급 불허)하며, 상호시장진출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임.

아. 건설산업 기본법 제28조의2(건설공사의 직접시공)원칙에 의거 낙찰 받은 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를 진행해야함.

자. 적법하지 않은 직접 시공(하도급) 위반 및 명의대여 등 확인 시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, 부정당 업체 등록 및 고발 조치 함.

차.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.

-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법 제4조, 제9조)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※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안전준수 이행각서(표준 및 공사용 각 1부)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.

카. 대학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·수도 등을 공급 받을 경우, 대학과 공사업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한건설협회 ‘완성공사 원가통계’ 경비율을 적용한 전기·수도로 계산식에 의하여 **전력비 및 수도광열비**를 준공시 정산하여야 함.

타. 낙찰자가 공사(물품, 용역의 납품 등)와 관련한 일체의 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, 이전 질권의 설정, 그 밖의 담보제공을 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음.
(상기 사항 확인 시 계약보증금 환수 및 계약체결 불가함.)

현장설명회
참여 시
제출서류

가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
나. 해당 건설업 면허 1부,
다.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.

문 의 처

- 사양 문의: 화학과 행정팀 권진혁 (054-279-8155)
- 입찰 진행: 구매관재팀 김지환 (054-279-2462 / jh.kim@postech.ac.kr)

현 장 안 전 관 리 수 칙

시공자는 당해공사 시공으로 인한 박반,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괴,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인적·물적재해와 화재 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에서 발굴된 유해·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.
2. 현장 공사 관계자(직원 및 근로자) 전원은 작업전 반드시 안전조회 및 T.B.M에 참석하여야 한다.
3.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.
4. 공사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서 위험표지와 “안전작업요령”을 부착하여야 한다.
5.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“안전관리요령”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.
 - (1) 작업장에서는 흡연, 화기 등 발화원이 되는 행위금지
 - (2)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
 - (3)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
 - (4) 향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 외는 출입금지
 - (5) 화약 및 기타폭발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 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
6. 작업요원은 작업과장에 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(1)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
 - (2)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착용
 - (3)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
 - (4)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소형 소화기 휴대 등
7. 공사용 시멘트,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.

8.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들은 다른 자재와 분리,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.
 - (1) 열,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
 - (2)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
 - (3)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
 - (4) 모든 화학물질(용접봉, 페인트/석유류, 가스류, 시멘트, 보온재 등 근로자에게 노출시 유해성이 있는 모든 물질 및 유해하지 않은 물질도 포함)을 반입시에는 해당 MSDS를 사전 제출/ 비치 및 경고표지를 부착
9.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.
10. 대형건축물 등 중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탱크, 임시소화전설비, 소화약 기타 소방도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,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현장에 소방대출소 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 한다.
11.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12.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적재 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함으로써 공사현장을 항상 혼잡하지 않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.
13.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리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.
14.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현장내의 적당한 위치(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)에 게시하여야 한다.
15. 혹서기·혹한기 등 기상에 따른 작업중지/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16. 작업 전, 중, 후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작업장소 및 통로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, 정리정돈이 미흡한 경우에는 작업을 잠시 대기하고 정리정돈을 실시한 후에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.